

등록번호	도로정책과-2970
등록일자	2021. 06. 03
결재일자	2021. 06. 03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서기관	도로정책과장
공영만	정권일	2021. 6. 3. 장순재

「고속도로등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」 개정추진	주요 검토사항	
	정책 중요도	낮음
	민원·갈등 가능성	낮음
	기관간 이견가능성	낮음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낮음
	서민생활 관련성	낮음

◆ 「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」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* (당초) '21년 9월 8일 → (개정) '24년 9월 8일(3년 연장)

- 붙임 1. 「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」 유효기간 연장 계획 1부.
 2. 「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」 개정안 1부. 끝.

도 로 국
 도로정책과

I. 추진 배경

- 「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(국토부 예규, '19.4.18)」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 위해 조문 개정 필요
- *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법제처 소관 대통령 훈령, '21.2.5)」 제7조에 따르면, 훈령·예규 등은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 설정 및 필요시 연장토록 규정되어 있음

II. 개정 추진

- 「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」 제17조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당초보다 3년 연장 추진
- 현행 지침의 유효기간('21.9.8)을 '24년 9월 8일까지로 개정

<현행 「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」>

제17조(유효기간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년9월 8일까지효력을 지닌다.

III. 향후 계획

- 규제심사 : '21.6월
-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: '21.6월~7월
- 고시 및 시행 : '21.8월